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- 184호

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
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
행정예고

2026. 4. 9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- 184호

「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-51호, 2024. 9. 24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9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고, 벤조페논-3(옥시벤존) 성분의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별표 1)

2. 의견 제출

이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참조 : 화장품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2815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
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
- 전자우편 : zinu5748@korea.kr
- 팩스 : 043-719-3400

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목 중 “제2조 관련”을 “제3조 관련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2호가목4)나) 중 “것”을 “것[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
는 제품(예: 드라이 샴푸 등)은 제외한다]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9)가)
중 “제품 및”을 “제품, 자기 전에만 바르는 제품(예: 나이트 크림 등) 및”
으로 하며, 같은 목에 15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5) 벤조페논-3(옥시벤존) 함유 제품(2.4 퍼센트 이하의 벤조페논
-3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)

용법·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

별표 2 제목 중 “제3조 관련”을 “제4조 관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2호나목

15)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(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)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화장품 용기·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 제2호나목 15)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·표시된 벤조페논-3(옥시벤존) 함유 제품의 용기·포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.

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
것(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
제품은 제외한다)

나) ~ 다) (생략)
10) ~ 14) (생략)
<신설>

[별표 2]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
레르기 유발성분(제3조 관련)

----- 제품, 자기 전에만
바르는 제품(예: 나이트 크림
등) 및 -----

나) ~ 다) (현행과 같음)
10) ~ 14) (현행과 같음)
15) 벤조페논-3(옥시벤존) 함유
제품(2.4 퍼센트 이하의 벤조페
논-3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
다)
용법·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
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

[별표 2]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
레르기 유발성분(제4조 관련)